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10,000,000	78,300,000
일반회계	2,210,000,000	66,300,000
특별회계	400,000,000	12,000,000
공기업특별회계	277,183,000	8,315,4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500,000	4,245,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8,500,000	3,855,000
공영개발특별회계	7,183,000	215,490
기타특별회계	122,817,000	3,684,51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000	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900	747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600,000	168,000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476,287	404,28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73,713	200,211
도시개발특별회계	37,575,000	1,127,250
도시재생특별회계	9,750,000	292,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267,100	848,013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0	600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576,000	137,28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6,844,000	505,3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②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③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폐지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

<용어 설명>

- 국 : 국고보조금
- 도 : 시 · 도비보조금
- 조 : 특별조정교부금
- 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시 : 시 자체재원
- 채 : 지방채
- 기 : 기금(중앙정부) 보조금
- 특 : 특별교부세